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7. 12.(일) / 총 1매(본문1)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	담당자	- 과장 변광욱,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서은혜 ☎ (044) 215-4310, 4313, 431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 과장 최정민, 사무관 김보람 ☎ (044) 201-4100, 4476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 의무기간 경과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중앙일보, '20.7.12) >

- ◆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 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 7·10대책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 4년 단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채워, 세금혜택 추징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 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 세제혜택과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044-201-44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